



제433회 국회 (임시회)
제9차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가기본계획 수립시 에너지 관련 기본계획과 연계 등 >
■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620호)

2026. 3.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국가기본계획 수립시 에너지 관련 기본계획 등과 연계 등	2

I. 제안경위

2025년 12월 24일 김위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에너지 안보나 전력수급의 안정성 등에 대한 체계적 연계 검토나, 계획의 변경 시 이에 대한 영향평가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관련 분야의 정책 불일치와 이로 인한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에너지 관련 기본계획 등과 종합적으로 연계 검토하도록 하고, 국가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탄소중립 추진과 에너지 안보 및 전력수급의 안정성 유지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III. 검토의견

1. 국가기본계획 수립시 에너지 관련 기본계획 등과 연계 등

개정안은 ① 국가기본계획 수립 시 자원안보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기본계획, 지역에너지계획,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 검토하여 에너지 안보 및 전력수급의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0조제1항),

② 국가기본계획 수립·변경시 에너지 안보 및 전력수급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며(안 제10조제3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의 수립·시행) ① 정부는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0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의 수립·시행) ① ----- ----- ----- ----- ----- ----- ----- ----- ----- ----- <u>. 이 경우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자원안보기본계획,</u> 「신에너지 및

현행	개정안
② (생략) ③ 정부는 국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국민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생략) <신설> ⑤ (생략)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에너지법」 제7조에 따른 지역에너지계획,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 및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 검토하여 에너지 안보 및 전력수급의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u>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하며, 국가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항이 에너지 안보 및 전력수급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u> ④ (현행과 같음) ⑤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국무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⑦ ----- ----- -----<u>방법·절차, 영향 평가</u>----- -----.

현행	개정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행법 제10조¹⁾는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

-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정부는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 전망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변화
 3.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한 부문별·연도별 대책
 5. 기후변화의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6.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사항
 7.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녹색금융 활성화 등 녹색성장 시책에 관한 사항
 8.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제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1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11.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정부는 국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국민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기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온실가스 감축·적응·정의로운 전환·재원조달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민의견수렴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기후정책 총괄계획 체계를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현행 국가기본계획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중심으로 수립·운영되고 있으나, 에너지 수급 안정성 및 에너지 안보와의 연계가 제도적으로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고²⁾, 계획 변경시 정책적 사전 검토와 국회의 통제 및 감시가 제한적일 수 있음.

이에 개정안은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전력수급의 안정과 에너지 정책 간 정합성을 강화하고, 기본계획 수립·변경 과정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에너지 관련 기본계획과의 연계 검토, 영향 평가 도입 및 국회보고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탄소중립 추진과 전력수급 안정·에너지 안보 간 정합성을 강화하고, 중장기 기후정책의 책임성·투명성 및 정책 신뢰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행법상 이미 제8조 제5항³⁾에 따라 국가 에너지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중장기 온

2) 일렉트릭파워, “3개 학회 합동 포럼, “재생E 확대와 원전 포함한 통합에너지 정책 간 조화가 필요하다”, 2025.9.3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⑤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배출·흡수 전망
2. 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기본계획에는 이러한 중장기 감축목표와 함께 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연도별 이행 대책이 포함되어 있어 에너지정책이 반영되어 있으며,

아울러 국가기본계획은 국가 비전인 2050 탄소중립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최상위 행정계획으로서, 이에 따라 에너지 안보 및 전력수급 안정성 등과 관련된 정책과 계획 역시 국가기본계획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도록 수립⁴⁾되어야 하므로 국가기본계획 변경 시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어색하다는 입장임.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행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국가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

-
3.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가능성
 4.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기여도
 5. 국가 에너지정책에 미치는 영향
 6. 국내 산업, 특히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업종 및 지역에 미치는 영향
 7.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8.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9.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온실가스중장기감축목표등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2. 「전기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3. 「국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4. 「지속가능발전법」 제7조에 따른 중앙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에 관한 계획
7.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8.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9.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기본계획
1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11.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
12. 그 밖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정한 주요 계획

록 규정되어 있어 에너지안보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수렴을 거칠 수 있고, 현행법 제78조제1항5)에 따라 정부는 국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취지가 이미 법률에 반영되어 있다는 의견인바,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36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8조(국회 보고 등) ① 정부는 국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계획 또는 시·군·구계획을 수립·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도계획 또는 시·군·구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회 보고 및 지방의회 보고의 시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